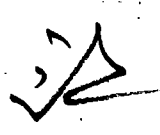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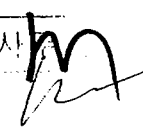


PUTA 부산교통공단 PUSAN URBAN TRANSIT AUTHORITY

우 614-722 / 부산시 진구 법천1동 861-1 / TEL (051)640-7603 / FAX (051)640-7123

FAX 送信文

받는이 (TO)	노동조합위원장 (참조 : 사무국장)	전화번호 051)508-1743	팩스번호 051) 509 - 4282
보내는이 (FROM)	부산교통공단 인사팀 교육고시담당 김 병 년		
제 목 (SUBJECT)	인사규정의 4개 내규 제·개정계획(안) 협의 요청		
송신매수 (PAGE)	총 10매 (표지포함)	송신일자	2005. 11. 23
보 내 는 내 용	1. 인사규정의 4개 내규 제·개정계획(안) 협의 요청 2. 인사분야 규정(내규) 제·개정 계획안 요지  05.11.23 김 병 년 기 시 결 사    		
※ 받아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상기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INTERNET HOMEPAGE : www.subway.busan.kr

21C 도시철도 운영 매력다임 선도

부산교통공단

수신자 노동조합위원장

(경유)

제목 인사규정의 4개 내규 제, 개정계획(안) 협의요청

1. 인사-1595(2005. 8.29)호, 인사-1791(2005. 9.22)호 및 인사-2263(2005.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인사규정의 4개내규 제·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5. 11. 24(목) 17:00 ~

※ 부교노2005-562(2005. 11. 21)호로 요청한 직제협의 후

나. 장 소 : 공단 8층 대회의실

다. 공단측 참석자 : 인사팀장, 평정담당, 교육고시담당

붙임 : 인사분야 규정(내규) 제·개정계획안 요지 1부. 끝.

부산교통공단이사



결재 기안자 김병현 인사팀장 박영재 경영지원처장 전결 박관근

협조 노무복지팀장

시행 인사-002282(2005.11.23) 접수 ()

우614-7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공단로6(범천1동861-1)

/ <http://www.subway.busan.kr/>

전화 640-7603

모사전송 051-640-7123

/ kby59@bta.or.kr

/ 공개

인사분야 규정(내규) 제·개정계획안 요지

2005. 11

 경영지원처(인사팀)

□ 인사규정

현 행	개 정 계 획(안)	사 유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2호 - 처장급 직원의 징계의결 및 팀장급 이하 직원의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 2급 이상 직원의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 처장급 직원 징계재심 기회부여 - 3급 이하 직원 징계재심은 고등 징계위원회에서 주관									
제10조(징계위원회 설치 운영) - 공단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위원은 인사담당 이사와 처장급으로 구성	- 공단에 고등·보통 징계위원회를 둔다. - 위원 구성 · 고등징계위원회 : 이사 및 처장급 직원 · 보통징계위원회 : 처장 및 팀장급 직원										
제11조(징계위원회의 기능) - 팀장급 이하 직원의 징계의결	- 고등징계위원회 : 2급 이상 직원의 징계의결과 3급 이하 직원의 징계재심 - 보통징계위원회 : 3급 이하 직원의 징계의결	- 재직 인원 증가에 따른 징계건수 증가 - 제척 등으로 위원구성 애로									
제12조(징계위원회의 기관) - 위원장 : 인사담당 이사 - 부 위원장 : 인사담당 처장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고등징계위원회</th><th>보통징계위원회</th></tr> <tr> <td>위원장</td><td>인사담당 이사</td><td>인사담당 처장</td></tr> <tr> <td>부위원장</td><td>인사담당 처장</td><td>인사담당 팀장</td></tr> </table>	구분	고등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인사담당 이사	인사담당 처장	부위원장	인사담당 처장	인사담당 팀장	
구분	고등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인사담당 이사	인사담당 처장									
부위원장	인사담당 처장	인사담당 팀장									
제15조의2(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 신체 정신상의 장애 휴직 등 결원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결원보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 육아휴직을 이유로 모든 불이익 처분금지” 이행 지원									

연령

개정제약(안)

사유

제16조(신규채용) 제4항 - 연령제한 · 공개채용 : 18세 이상~정년의 범위내 · 특별채용 : 직급별로 30세~50세 까지 제한	- 연령제한 · 공개채용, 특별채용 : 20세 이상~정년의 범위내	- 하한연령 20세로 상향 : 금년도부터 시행된 철도안전법상 20세 미만은 철도운전면허 취득 불가 - 특별채용 연령제한 폐지 : 연령제한 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권 조사까지 하는현실을 감안하여 채용 인원도 극 소수인 특별채용에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제33조(승진소요의 최저기간 등) 제2항 - 승진소요년수 산정에 포함하는 휴직기간 · 병역복무, 공상휴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공단의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 유관기관 임시 고용	- 육아 휴직기간 추가	- 상위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에 부합토록 보완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제64조(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임, 정직, 감봉 및 견책	- 강임 삭제	-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타 지하철과 균형필요 ※ 이 규정 시행전에 강임 처분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명시

□ 인사규정시행내규

현 해	개 정 계 획 안	사 유
제16조(합격자 결정기준) 제3항 - 최종합격점수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득점, 전공과목 고득점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다수 발생에 대비
제17조(신체검사) 제2항 - 공무원신체검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채용시 건강진단에 의함	-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 추가	- 철도안전법 제23조 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업무 종사자는 건교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제22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 - 공무로 사망한때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삭제	- 대법원 판례(95누15926) : 직위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 결여
"전보 및 승진관련 조항" 없음	- 신설 · 전보 및 승진시기 및 방법 명시 전보 : 6·12월, 승진 : 1·7월 · 승진방법 명시 : 4급이상, 5급, 6급 이하 구분	- 예측 가능한 기획인사 필요

□ 인사평정내규 제정내규안

현행	개정계획(안)	사유
없음 ※ 평정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명시	- 신설규정 주요내용 : "별첨"	- 인사평정내규를 제정하여 평정 관련 사항 명시

☐ 승진자격시험내규

현행	개정계획(안)	사유
【별표1】 시험과목 - 법학개론(50),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50) ※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도시철도법, <u>공단법(시행령)</u> , 정관, 직제규정(내규), 취업규칙, <u>인사규정(내규)</u> , 사무관리규정(내규)	- 법학개론(50),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50) ※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도시철도법, <u>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u> , 설치조례, 정관, 직제규정(내규), 취업규칙, <u>인사규정(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평정내규)</u> , 사무관리규정(내규)	- 시 이관에 따른 법령 및 규정 과목 변경

☐ 당직근무내규

현행	개정계획(안)	사유
【별표1】 당직근무 조편성 - 일직근무일 : 일요일, 공휴일 - 일직 책임자 : 팀장급(2급) - 숙직 책임자 : 팀장·담당급 - 일직 및 숙직자 : 5급~9급, 고용직	【별표1】 당직근무 조편성 - 일직근무일 : <u>토요일</u> , 일요일, 공휴일 - 일직 책임자 : <u>팀장급(2·3급)</u> - 숙직 책임자 : <u>담당급((3·4급)</u> - 일직 및 숙직자 : <u>5급~9급</u>	- 실정에 맞게 정비

별첨)

인사평정내규제정내규안 요지

1. 제정이유

평정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현 인사규정시행내규에 규정되어 있는 평정 관련 조문 보완으로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합리적인 수용이 어려워 인사규정시행내규의 평정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별도의 인사평정내규를 제정하여 원활한 평정 시행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기평정 기준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 변경 및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사유 추가(제2조, 제30조, 제31조)

○ 정기평정 기준일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정기평정 기준일	매년 3월31일	매년 10월31일	- 성과급 지급시기(2월) 감안 - 대규모 전보(12월) 및 승진(1월) 시기 감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매년 4월30일	매년 11월30일	

※ 최초 시행년도(2006년) 정기평정은 2회(2005년12월31기준, 2006년10월31일 기준) 시행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에 “업적평가 결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 사유 : 근무평정과 업적평가지기 불일치

나. 종합평정점 배점기준 조정(제3조, 별표1)

()은 현재 반영 점수

구분	총점	기본점	업무능력	태도	인성	기타	합계	비고
2,3급	115(100)	60(70)	20	10	10(20)	10(5)	3(2.5)	2(2.5)
4,5급	115(100)	65(60)	15		20(30)	10(5)	3(2.5)	2(2.5)
6,7급	115(100)	60(50)	10		30(40)	10(5)	3(2.5)	2(2.5)
8,9급	115(100)	50(40)	10		40(50)	10(5)	3(2.5)	2(2.5)

다. 업적평가 및 다면평가 시행(제15조~제18조, 별표9)

- 업적평가 : 경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10%~20% 반영
- 다면평가 :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3급 이상 시행

라. 경력평정제도 변경(제20조, 제22조, 별표5)

구분	중 간 계	현 장 계
대상기간	10년	7년
반영비율	20~50	10~40
인정경력	- 당해 직급 바로 하위직급 경력인“올”경력 인정 - 공무원 재직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폐지

마. 가점평정제도 변경(제25조~제28조, 별표6, 별표7)

구분	중 간 계	현 장 계
반영비율	연수(5%), 제안(2.5%), 포상(2.5%)	연수(10%), 제안(3%), 포상(2%)
연수사별 반영비율	- 5년 이내 연수 : 10할 - 5년 초과 10년 이내 : 5할	- 5년 이내 연수 : 10할 - 5년 초과 8년 이내 : 9할 - 8년 초과 10년 이내 : 8할
기 타	미이수자 및 연수성적 60점 미만인 자 : 평정하지 아니함.	미이수자 및 연수성적 60점 미만인 자 : 7점 인정

바. 근무평정 반영기간 조정(제29조)

구분	중 간 계	현 장 계
2급~5급 : 3년 6급~9급 : 2년		2급~3급 : 3년 4급~9급 : 2년

사. 상대평가제도 보완(별표3)

- 평정대상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도 일정조건 충족시 “수”평정 가능
- 조건 : 당해직급 포상자 및 지식 마일리지 일정수준 이상 획득자

아. 평가요소 개선(별지1·2)

- 평정서를 3급 이상과 4급 이하로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 구체화